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10월호 특집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③**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일본 경찰**

자치경찰 INTERVIEW

‘자치경찰’에 대한 다양한 시각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서준배 교수

현장 속으로 미래를 향해, 스마트 자치경찰!

“과학기술을 CPTED에 디자인하다”
대구형 스마트 CPTED 플랫폼 구축

위원회 FOCUS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한 충남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아이·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위원장 기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 권희태 위원장』

위원회 소식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경찰청 소식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충남 보령 청보리밭〉
부산청 부산남부서 최민희 경위님 작

2022년 **10** 월

발행일 | 2022년 11월 9일

발행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2022년

10 월

C O N T E N T S

10월호 특집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③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일본 경찰

1

자치경찰 INTERVIEW

‘자치경찰’에 대한 다양한 시각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서준배 교수

9

위원회 FOCUS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한 충남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

14

위원장 기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 권희태 위원장』

18

현장 속으로 미래를 향해, 스마트 자치경찰!

“과학기술을 CPTED에 디자인하다”
대구형 스마트 CPTED 플랫폼 구축

20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아이·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24

위원회 소식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27

경찰청 소식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29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③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일본 경찰



過去と現在の共存(과거와 현재의 공존), 일본 경찰

일본 경찰은 전통을 중시하고 큰 변화에 신중한 일본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 경찰을 대표하는 '고방'(交番)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방'(交番)은 '고방소'(交番所)라는 명칭으로 1874년 경시청 창립 당시 최초 시행되었는데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출발하여 도보 순찰을 실시하는 중에 특정 지점에서 교대로 서서 주변 경계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해당 지점에서는 '고방'(交番)이 존재하고 있으며, 도쿄 시내를 거닐다 보면 커다란 경찰봉을 짊고 서 있는 경찰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기의 고방소〉



〈현재의 고방〉

‘고방’(交番) 제도

- ▶ 개요 경찰서의 관할 구역을 분할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거점으로 하고 있는 시설
※ '17년 기준 도쿄도내 826곳의 고방 운영
- ▶ 근무 경찰서에서 매일 아침 조회 후 경찰관 배치(고정 발령), 경찰관은 야외에서 24시간 교대근무 실시
- ▶ 역할 △순찰 △사건·사고 대응 △길 안내 △분실물 취급 등

일본의 국가 개요

일본의 국토면적은 37만 7,915km²로 한반도의 약 1.7배이며, 인구는 약 1억 2,600만명('20년 2월 기준)입니다.

정치형태는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고,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의회가 정치체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의회의 경우 임기 6년의 참의원과 임기 4년의 중의원으로 구성(양원제)되며, 의회의 신임에 기반한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합니다(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의 수반을 담당).

한편 일본의 지방자치 행정구역은 우리나라의 광역시 및 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시·읍·면에 해당하는 시·정·촌(市·町·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都는 도쿄도, 道는 홋카이도(북해도), 府는 교토부·오사카부, 縣은 그 외 43개 광역자치단체



일본의 국가경찰

개요

일본의 국가경찰은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국가공안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이 소속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내각총리대신이 소할*하는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청을 관리**하며, 경찰청 소속 지방경찰기관으로 6개의 관구경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소할 : 조직상 상하관계에 있지만 지휘·명령권이 없는 감독관계

**관리 : 국가공안위원회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개괄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경찰사무가 운영되도록 통제한다는 의미(구체적 사무집행에 대한 지휘·감독X)

조직

1 국가공안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재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은 내각과의 긴밀한 연계 및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를 위해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은 임명 전 5년 간 경찰 또는 검찰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참의원 및 중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위원의 경우 특별직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합니다.

임명 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의 전력이 없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양식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여금 경찰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운영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경찰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안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경찰행정을 국민으로부터 동떨어지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일본경찰법은 국가공안위원회의 임무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제1항), 국가공안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 제도 기획 및 입안 사무 △경찰 관련 국가예산에 관한 사무 △국가 공공안전에 관련된 경찰운영 사무 △광역조직범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무 △경찰교양·통신·장비에 관한 사무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 사무 등에 대하여 경찰청을 관리하고(제5조제2항), 그 외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게 된 사무를 담당(제5조제3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안위원회의 재난현장 시찰〉

2

경찰청



〈항공경찰〉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에 두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합니다. 경찰청 조직은 △경무·인사·회계·장비를 담당하는 장관관방 △생활안전국, 형사국, 교통국, 경비국, 사이버국 등 5개국 △경찰대학교, 과학경찰연구소, 항공경찰본부 등 3개의 부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를 받아 스스로의 이름으로 △국가 공공안전에 관계된 사항 △전국적 관점에서 대처해야 할 사항 △기술적·능률적 측면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일본경찰법 제5조 제2항의 국가공안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동일).

※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은 동일한 사무에 대한 관리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있는 것임

또한 국가공안위원회가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사무(일본경찰법 제5조제3항)에 대해 국가공안위원회를 보좌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담당업무 및 보좌업무, 즉 소관사무에 대해서도 도도부현 경찰(도도부현공안위원회 및 그 관리하에 있는 도도부현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휘·감독에 대해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속되며, 위원회의 관리방침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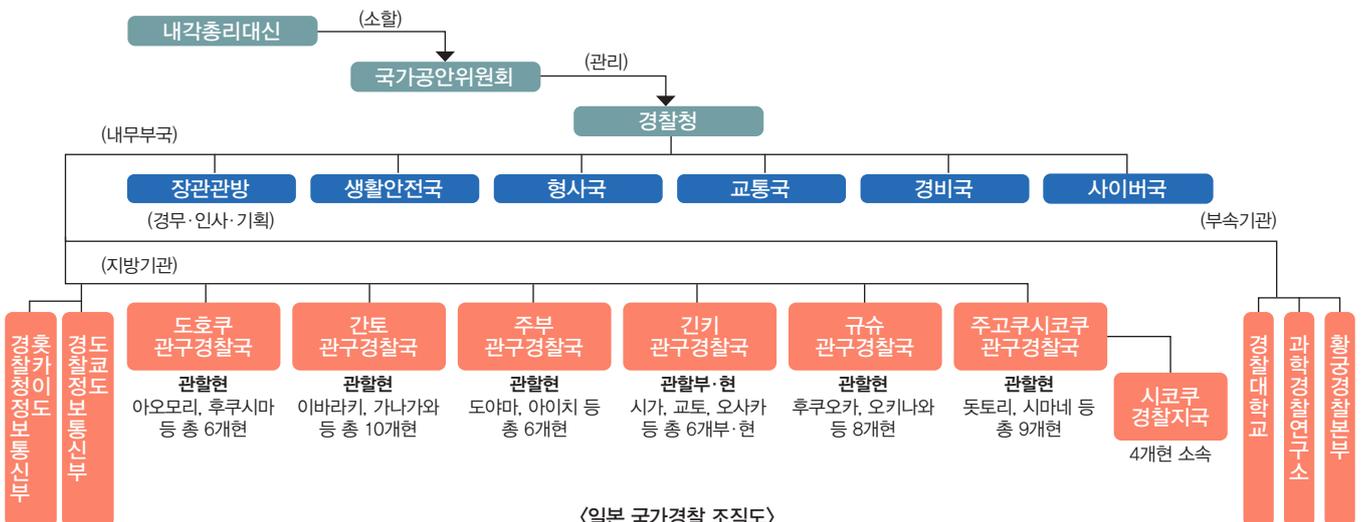
3

관구경찰국

경찰청의 지방기관에 해당하는 관구경찰국은 45개 부현경찰을 6개의 관구경찰국으로 나누어 관할(도도부현 중 부현에만 관구경찰국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구경찰국은 경찰청 소관사무 중 일부*를 지역적으로 분담, 부현경찰본부에 대한 중간관리·통제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사무에 대하여 부현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광역조직범죄 수사 △광역교통 규제 △재해 및 소요사태 시 경찰운용·지휘 등



일본의 자치경찰

개요

일본의 자치경찰은 전국 47개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 지사의 소할** 하에 있으며 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관리 :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개괄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경찰사무가 운영되도록 통제한다는 의미

**소할 : 조직상 상하관계에 있지만 지휘·명령권이 없는 감독관계

조직

1 도도부현공안위원회



(이와테현공안위원회 주관 경찰서장 회의)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도·도·부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를 포괄하는 지정현(指定縣)의 경우 5인, 그 외 현의 경우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임기 1년, 재임 가능), 위원은 도도부현 지사가 도도부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임기 3년, 2회에 한해 재임 가능)

※ 도도부현공안위원은 국가공안위원과 같이 임명 전 5년 간 경찰 또는 검찰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공무원 경력자 중에서 임명

2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



수도인 도쿄도에는 경시청을, 도부현에는 도부현 경찰본부(46개)를 두며, 경시청 또는 도부현 경찰본부 소속으로 경찰서와 파출소·주재소·고방을 두고 있습니다.

도쿄도 경시청의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쿄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부현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부현공안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합니다.

*수도경찰 사무의 경우 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치안 책임에도 관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시총감의 임명에 대한 승인권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함임

경시청 및 도부현경찰본부의 내부조직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합니다. 또한 지방경찰 직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하되, 경찰관의 정원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방면위원회 및 방면본부

- ▶ **홋카이도** 홋카이도공안위원회는 관할을 5개의 방면으로 나누어 그 중 삿포로의 1개 방면만을 직할하고, 4개 방면에 해당하는 하코다테, 아사히카와, 기타미, 구시로에는 방면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경찰조직 또한 삿포로 방면은 도경찰본부가 직할하고, 그 외의 방면에는 각 방면공안위원회마다 대응하는 방면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 ▶ **도쿄도** 경시청에 10개 방면본부가 있으나 이는 홋카이도의 방면본부와 성격이 상이. 홋카이도 방면본부는 경찰법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경찰사무를 직접 처리하나, 경시청의 방면본부는 경시청 조직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연락조정 업무를 사무로 함
 - 이러한 맥락에서 홋카이도의 방면본부에는 방면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시청 방면본부에는 방면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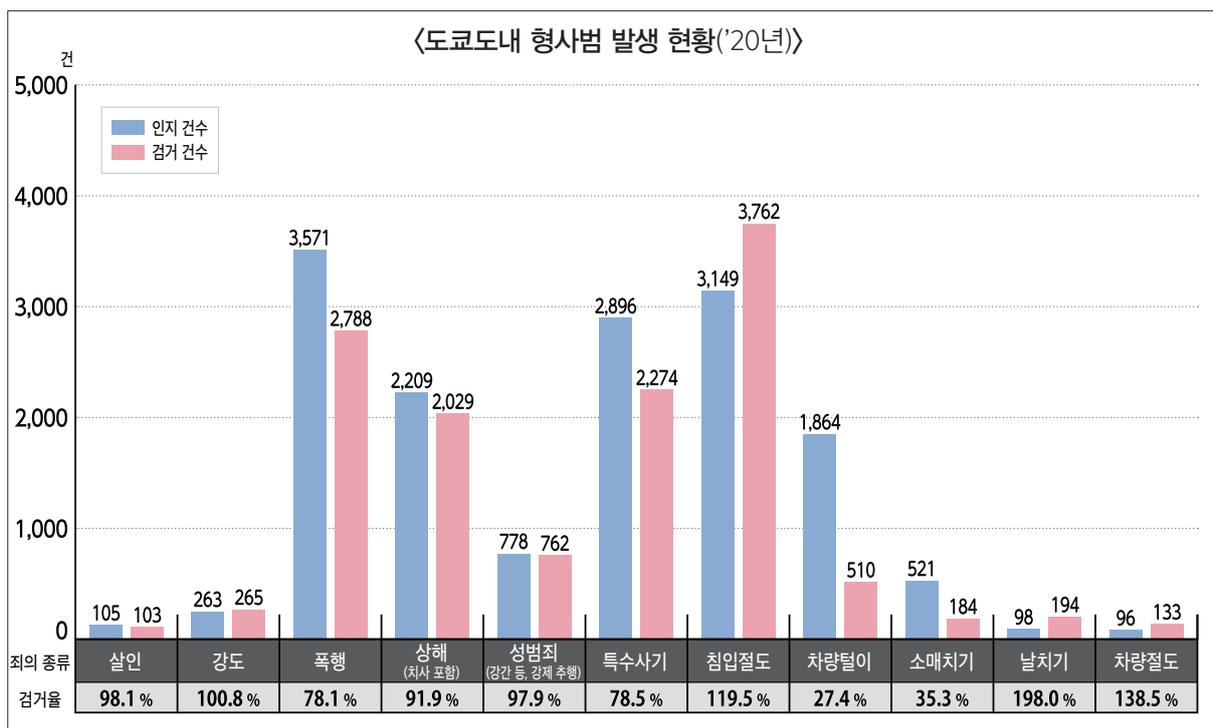
도도부현 경찰은 관할구역에서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등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그 모든 것에 전체적인 책임을 집니다.

도도부현 경찰은 그 사무 중 경찰청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이러한 사무에 있어서도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경찰청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 한하여 지휘·감독을 통해 국가의 치안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일본경찰법

제2조(경찰의 책무) ① 경찰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피의자의 체포,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것을 그 책무로 한다.

제36조(설치 및 책무) ② 도도부현경찰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에 대하여 제2조의 책무를 진다.





인사

도도부현 경찰공무원 중 경시(警視, 우리나라의 경정) 이하는 지방공무원, 경시정(警視正, 우리나라의 총경) 이상은 국가공무원*인 2중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경시총감, 도부현경찰본부장 및 도도부현경찰 중 지방경무관의 임면권을 모두 국가공안위원회가 가지게 됨 (도도부현경찰본부장은 경찰청에서 파견되는 형태)

〈일본 경찰직원 정원(20년 기준)〉

구분	경찰청				도도부현경찰					합계
	경찰관	항공경찰	일반직원 (기술, 행정)	계	경찰관			일반직원	계	
					지방경무관	지방경찰관	소계			
정원(명)	2,179	932	4,884	7,995	630	259,369	259,999	28,418	288,417	296,412

예산

도도부현 경찰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도도부현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국고지번금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해 일부 사무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고지번금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

▶ 국고지번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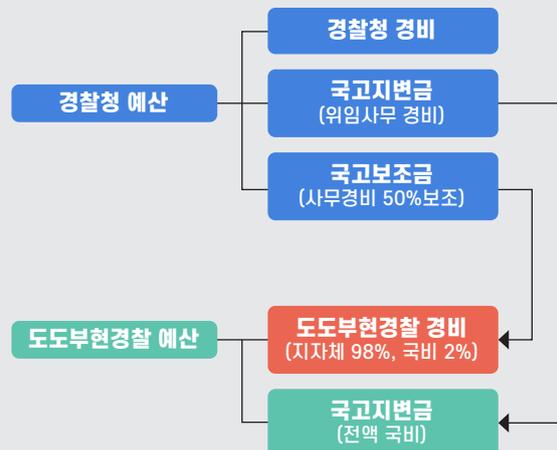
경시정 이상에 대한 인건비, 국가기관의 위임 사무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를 국고지번금으로 지원

▶ 국고보조금 제도

도도부현의 경찰사무 중 국고지번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경비의 50%를 보조

※ 전체 도도부현의 경찰경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의 지원 분은 약 2% 정도이며, 나머지 98%는 도도부현의 재원으로 충당

〈도도부현 경찰예산의 구조〉



대규모 재해·소란 등 긴급사태 시 대응체제



내각총리대신은 대규모 재해, 소란 및 그 밖의 긴급사태 시에 치안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공안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하여 전국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사태 포고가 발령되면 내각총리대신이 일시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며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청장관에 대해 지휘·감독합니다.

이때 경찰청장관은 포고구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에 대하여, 관구경찰국장은 포고구역을 관할하는 부현 경찰본부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지휘합니다. 또한 포고구역 관할 이외의 도도부현 경찰에 대해 포고구역 및 기타 필요한 구역에 경찰관의 파견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렇게 파견된 경찰관은 해당 구역 내의 어떤 지역에서도 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각총리대신은 긴급사태의 포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구하여야 하며, 국회가 긴급사태 포고의 불승인 또는 포고 폐지를 의결한 경우 신속히 긴급사태 포고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기타



〈경시청 통신지령센터(110)〉



〈경시청 여성사이카 부대〉

범죄신고대응시스템

경찰통보용전화(110)와 상담전용전화(#9110)를 구분하여 활용합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전화는 경찰통보용전화(110)로, 긴급하지 않은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용전화(#9110)로 유도함으로써 신고대응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많은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 긴급신고(110)는 자치경찰 단위로만 운영되므로 국가경찰과의 중복·경합 문제는 발생X

상호협력

도도부현 경찰은 상호 독립되어 있고 상하관계가 아니므로 효율적 경찰운영을 위해 각 도도부현 경찰에게 경찰법상 상호협력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본 코너의 사진은 모두 일본경찰청 및 도쿄경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된 사진임을 밝힙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다양한 시각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서준배 교수

이번 호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자치경찰발전연구원(’21. 10. 29. 경찰대학에 설립)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서준배 교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진행자〉 경찰대학에 찾아오는데 하늘이 참 높고 맑았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준배 교수님〉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침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예고 등과 맞물려 자치경찰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을 해왔었는데요. 향후 제도 방향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차 한잔 하셨으니 회의실로 이동하실까요? (웃음)

”

2021년 7월 1일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하면서 사무만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로 구분하여 국가경찰공무원들이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 이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 것인데요, 제도 도입 후 1년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창경 76년 역사에 있어 경찰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매우 의미가 큰 변화입니다. 제도가 변화될 때에는 큰 혼란이나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일원화 모델은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재정부담도 완화된 장점이 많은 모델입니다. 특히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공고히 확립되어 나가게 된 점, 지방예산을 치안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점, 그래서 치안정책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합니다.

기존 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도록 한 결과, 큰 혼란이 없는 대신

상당수의 일반 국민들과 현장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누리는 치안서비스는 살아 숨쉬는 공기와도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나,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인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요. 경찰이 그동안 제공했던 우리나라 치안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밤늦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만일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혼란, 불편이 야기되었다면 국민들은 부정적 의미의 변화를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변화의 체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치안서비스에 만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그간 안정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모델입니다. 그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인 시·도경찰청장이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방예산을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도는 한 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가 반영된 사회적 산물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에 따라 어느 곳에서는 우수한 제도라도 다른 곳에서는 실패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도로명주소를 예로 들어볼까요? 영미의 경우 도로가 크고 반듯해서 도로명주소를 통한 특정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 단위로 거주해왔으며, 그 결과 도로명주소를 시행할 때 많은 혼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코 성공하지 못한 제도인 것이지요. 따라서 선진국의 제도가 무조건 우수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제도가 가장 우수한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킹턴의 '정책의 창' 모형*에 따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간 우리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온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흐름」의 측면에서는 '정책의 창'이 열릴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경찰 76년 역사 동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못했던 것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본격화와 함께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책의 흐름」, 그리고 수사권 조정 등 정치적 문제가 맞물린 「정치적 흐름」이 교

차되면서 인위적으로 「문제의 흐름」을 창출해 내었고, 그 결과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듯 제도 도입 과정이 자연스럽게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기존에 제공되던 치안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그 내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노력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킹턴의 「정책의 창 모형」 : 서로 독립적으로 고유한 규칙에 따라 흘러다니던 문제·정책·정치적 흐름이 특정 계기로 결합하게 되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는 이론. '정책의 창'은 국회 정기회의 개최 등 규칙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대규모 사고 등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함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중요성이 무척 커진 상황이므로 각 위원들의 책임이 막중한데요, 현행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주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 훌륭하게 고안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법조인 또는 법학·행정학·경찰학 교수로 다소 편중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일반시민·사회적 약자·여성의 참여가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시민·사회적 약자·여성 비중이 늘어나면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비전문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휘·감독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비효율성이 초래되지는 않을까요?

성별·경력 등을 불문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폭넓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자치경찰제는 바로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시행된 제도이므로 그 취지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행정에 관심 있는 보통 시민, 장애인 복지 강화에 목소리 내는 장애인, 관내 학교폭력이 걱정인 가정주부 등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으로써 현장감 있고 입체적인 위원회 시책을 수립해나갈 수도 있을 테고요. 또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다른 전문가 위원들 역시 존재하므로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인사권 등이 명목적으로만 주어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미권의 경우 계급 중심의 조직문화가 아니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계급과 상관없이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대우를 해주기에 경찰관들이 승진을 우선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계급 중심의 조직이며, 더욱이 중간관리자부터 고위직까지의 수가 급감하는 소위 '첨탑형 조직'입니다. 승진과 보직이 경찰관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급격한 변화로 그간 정착되어 유지되어 온 인사 문화가 자칫 흔들릴 경우 기존에 훌륭하게 제공되어 왔던 치안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감 이하 경찰관에 대한 임용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지구대·파출소장 보직 시 사전 의견 제출권 등을 충분히 활용하는 가운데, 인사권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주, 세종, 강원에 대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추진하는 등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이원화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의 예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이 예방·단속 업무를 넘어 수사 업무 등 경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경찰(※ 예방·단속 등)과 수사경찰이 이론상으로는 분리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 칼로 무 자르듯이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했듯이 제도란 역사, 전통, 문화가 반영된 사회적 산물입니다. 도로명주소처럼 영미에서 성공적인 제도라도 역사, 전통, 문화를 달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문화적 토양이 충분히 갖추어질 필요가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당장 경찰 조직 문화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영미와 달리 계급 중심적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으로는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부족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현 시점에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기존 제주자치경찰단과 같이 일부 행정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함께 수행하면서 협업하는 형태가 어떻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인데, 그간 유지되어 온 치안서비스의 수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가외적으로 자치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치안서비스 범위의 확장을 도모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융합·과학·스마트치안 시대이며, 전문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직 내 계급 중심 문화가 전문성 중심 문화로 반드시 변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수한 인재도 계속 경찰에 유입될 겁니다.

세계 최고 치안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경찰의 모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전국의 모든 시·도자치경찰위원님과 사무국 직원분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시는 경찰관 여러분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 인터뷰 답변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준배 교수,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약력

- 1977년생
- 포츠머스대학 대학원 박사 / UCLA 대학원 정책학 석사
-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 / (사)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 / 現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등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한 충남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



충남자치경찰이 지나온 길, 도민과 밀착,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정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21. 3. 31. 전국 최초 출범한 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수요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체계 구축 등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기틀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빅데이터 기반 교통대책 수립 △충남형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위원회의 고민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충남자치경찰 비전」 수립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1주년이 되는 지난 '22. 3. 31.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5대 목표, 15개 추진전략, 50개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의 장과 함께 대외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5대 목표(△주민참여 △범죄예방 △약자보호 △교통안전 △협업치안) 달성을 위해 50개 실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대 목표	주요 실행과제
주민참여	▶주민자치조직 거버넌스 구축 및 주민참여 공모전 (포스터 등) 등
범죄예방	▶시·군별 수요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등
약자보호	▶수요자 중심, 학교·가정·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치안대책 수립·시행 등
교통안전	▶빅데이터 기반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등
협업치안	▶시·군에 자치경찰 담당 전담직원 지정,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등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과 자치경찰이 함께 마을의 치안 이슈를 해결하고 마을 특성에 따라 생활안전 대책을 발굴하고자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 읍·면·동사무소, 지구대·파출소가 함께 ‘치안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특성별*, 목적별**로 맞춤형 주민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역특성별 도시·농어촌·섬마을·관광지·유휴가·학교 밀집지역 등

** 목적별 주민치안·사회적약자보호·교통안전 등

'23년도부터 3개 지역을 시범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자치경찰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성공의 중심 축, 자치경찰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경찰관서별 찾아가는 힐링버스 운영〉



〈이달의 자치경찰 포상〉

자치경찰제가 성공적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자치경찰사무를 담당·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제도 수용성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직원에게 복지포인트(年 50만원, 총 2,747명 대상)를 지원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숲 힐링캠프*(5회) △찾아가는 힐링버스**(도경찰청·경찰서, 16회) △이달의 자치경찰 선정·포상(月 1회) 등은 직원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올해 추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 숲 힐링캠프 서천 치유의 숲 방문, 모시잎차 마시기, 맨발 걷기, 명상체조 등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힐링버스 정신건강전문기관의 의뢰기계를 탑재한 버스 관서 순회, 정신건강 검사 등 스트레스 관리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충남형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신속한 피해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간 통합 대응을 강화하고자 '22년 1월부터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범운영 결과, 3개 시·군에서 67회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총 687건의 가정폭력 신고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보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8.6% 증가하였음에도 재발 우려 가정의 재신고율은 41.5%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2년 8월초에는 가정폭력으로 멎은 가정이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5가정 17명을 선정하여 1박 2일의 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추진



최근 3개년(19년~21년)간 도내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계절·요일·유형별 교통사망사고의 원인과 추이를 분석하고,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15% 감소를 목표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탄력단속, 시각적인 교통안전홍보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맞춤형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여 지난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21년 대비 24% 감소하였고, 추석에는 30%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 어린이 대상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통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인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될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먼저 충남에 거주 중인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 서포터즈'는 간담회, 정책제언 등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홍보하면서 차세대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기는 33명이 활동하였고, 제2기(현재)는 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협의회, 도로교통공단 등 14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함께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치안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충남도자치경찰위원회
권희태 위원장

지난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2006년 교육자치 실현에 이어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 만에 완성체로서 지방자치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공공안녕, 사회질서 유지의 치안 활동 가운데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등 민생치안 서비스는 지방정부 책임 아래 기획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지난 76년간 경찰의 치안 활동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 활동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치안 요구를 받아들여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경찰 활동으로 방향성을 변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그동안 지역 주민, 지방정부, 학계 등에서 요구해 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이 분리된 이원화 체제가 아닌, 지방정부에 민생치안 사무에 대한 책무만 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집행 권한은 기존의 국가경찰 조직에서 행사하도록 설계된 일원화 체제로 시행됨으로써 보완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충남도 자치경찰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민생치안 바람을 바탕으로 주민 체감형·지역 맞춤형 시책을 가시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시민 경찰 등 치안협력단체는 물론 새마을회·주민자치협의회·이동장협의회·여성단체협의회 등 주민 자율조직, 그리고 MZ세대 청년서포터즈와 정례적인 소통 기회를 갖고 주민들의 치안 요구를 수렴하면서 민생치안 활동의 협력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대학, 교통 관련 유관기관, 농협, 삼성화재, 충남도 개발공사, 응급의료기관, 네비게이션 회사,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범죄예방, 교통사고 감소, 학대·폭력 피해자 예방·보호 시책의 협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치안 활동의 일선 현장인 시·군과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체감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경찰서장 협의를 거쳐 지역치안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 단위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안심귀가 앱과 연동한 안심 귀갓길 조성, 마을 단위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빅데이터(Big data)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 노인보호구역 음성 네비게이션 지원,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

원 시스템 운영, 범죄와 사고로부터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대책 등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난 1년여 동안 자치경찰제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오기는 있으나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고 손에 잡히는 정책효과도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직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의 참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에 부여된 자치경찰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된 경찰 조직 체계 정립과 지방정부에 자치경찰사무 집행 권한이 온전히 부여되어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도를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치안 요구가 수렴된 지역 맞춤형 민생치안 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자원 확보 대책 마련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방식도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벽이 잔존해 있는 지방행정기

관과 치안행정기관간의 민생치안서비스 연계·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고, 민간조직 및 유관기관이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아직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도이므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치경찰공무원들이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들에게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보장해 주겠다는 열정을 보여준다면 자치경찰제도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오직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어느 순간 크게 성장한 자치경찰제도를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순간에도 지역주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희태 위원장 약력

배재대학교 행정학박사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
現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장



“과학기술을 CPTED에 디자인하다”

대구형 스마트 CPTED 플랫폼 구축

추진 계기

'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는 “시민 중심! 시민 안전! 대구자치경찰!” 비전(VISION)에 따른 시민의 요구(Needs)를 반영하고자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할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CPTED* 사업(35.6%)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 지원(30.4%) △시민 참여형 범죄예방 협의체 활성화(11.1%) 순의 응답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CPTED 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6%가 범죄예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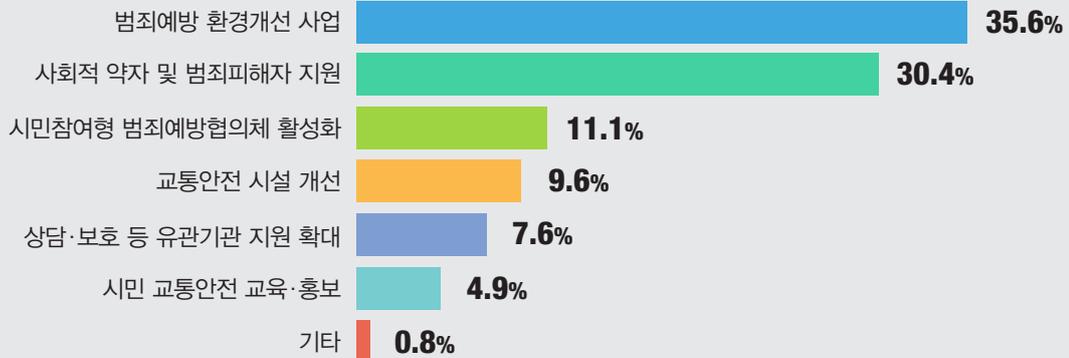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방식으로는 △CCTV 확대 설치(73.6%) △스마트 비상벨 도입(33.7%) △LED 보안등 설치(30.6%)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확실적인 CPTED 사업에서 탈피,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 모델로 [1단계 : '21년~'22년] 대구형 CPTED 사업 추진 / [2단계 : '22년~27년] 과학기술 기반, 대구형 스마트 CPTED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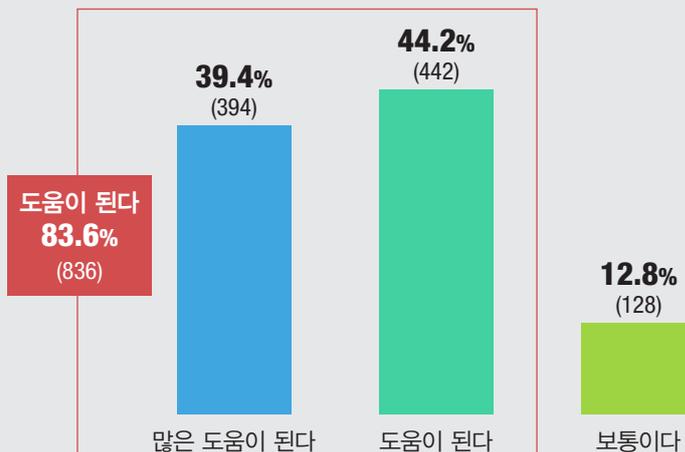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1961년 제인 제이콥의 저서 「위대한 미국 도시의 생사」에서 기원한 범죄예방 방법,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지역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시민 1,000명 대상, 대구시 자치경찰의 역할 및 정책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분야 (단위 : %)



CPTED 도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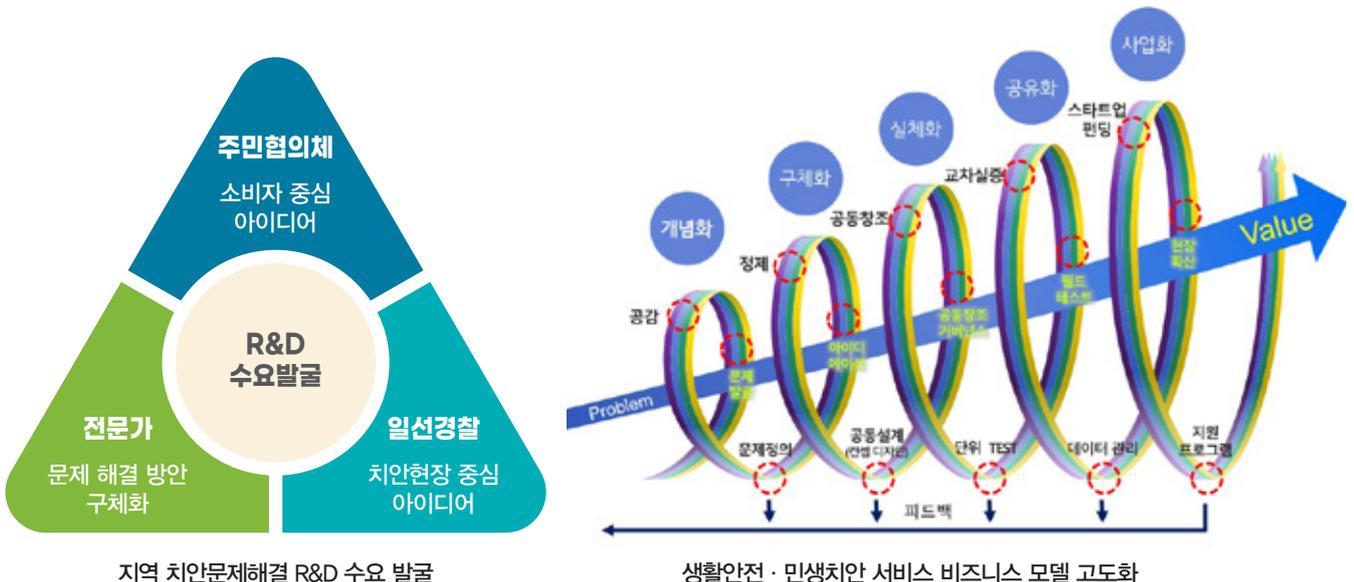


추진 비전·목표 및 전략

비전	<b style="color: red;">주민 참여 생활안전·민생치안 서비스 실증을 통한 <b style="color: blue;">범죄예방 및 체감안전도 증진
목표	<b style="color: yellow;">대구형 CPTED기반 <b style="color: yellow;">시비전 활용 생활안전·민생치안 서비스모델 발굴
전략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003366;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p>생활안전 민생치안 리빙랩</p> <p>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치안서비스 대상 지역 설정 • 생활치안 문제발굴 리빙랩 구성 • 생활치안 문제해결 서비스 구체화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3366;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p>생활안전 민생치안 서비스 기술</p> <p>치안 취약 지역 실증 기술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치안 문제해결 혁신주체 참여 전문 워킹 그룹 구성 • 생활치안 서비스 모델 피드백 개선 • 생활치안 서비스 실증기술 체계화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3366; padding: 5px; width: 30%; text-align: center;">  <p>대구형 CPTED 인증체계</p> <p>범죄예방 평가 지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외 CPTED 인증 체계 분석 • 지역 맞춤형 생활 치안서비스 적용 • 대구형 범죄예방 평가지표 체계 개발 </div> </div>

첨단 스마트기술을 CPTED와 접목하여 지역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화된 치안 범죄예방 솔루션을 만들어갈 예정이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범죄 예측 시스템(Crime Prediction System)의 적용을 통해 범죄발생 사전 탐지, 위험대상 인지, 범죄발생 핫 스팟 파악 등 범죄발생 예방 치안기술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문제의 발굴에서부터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역공동체(행정·전문가·주민·경찰)가 협업하는 스마트 생활안전·민생치안 리빙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공동체)을 운영함으로써 치안 현장의 주체인 일선 경찰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통합 플랫폼을 구축, CPTED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주요 추진사업

1단계 (’21년~’22년)

대구형 CPTED 사업은 ‘지역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우리집 안전, 우리마당 안전, 우리동네 안전!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추진됩니다.

먼저 ‘우리집 안전’을 위해 여성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가구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매년, 시비 2억), 또한 ‘우리마당 안전’을 위해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빌라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5년간, 공공기관 예산 20억), 나아가 ‘우리동네 안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22년, 2개소, 특별교부세 2억) △**초·중·고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매년, 시비 2억~4억) 등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고,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CPTED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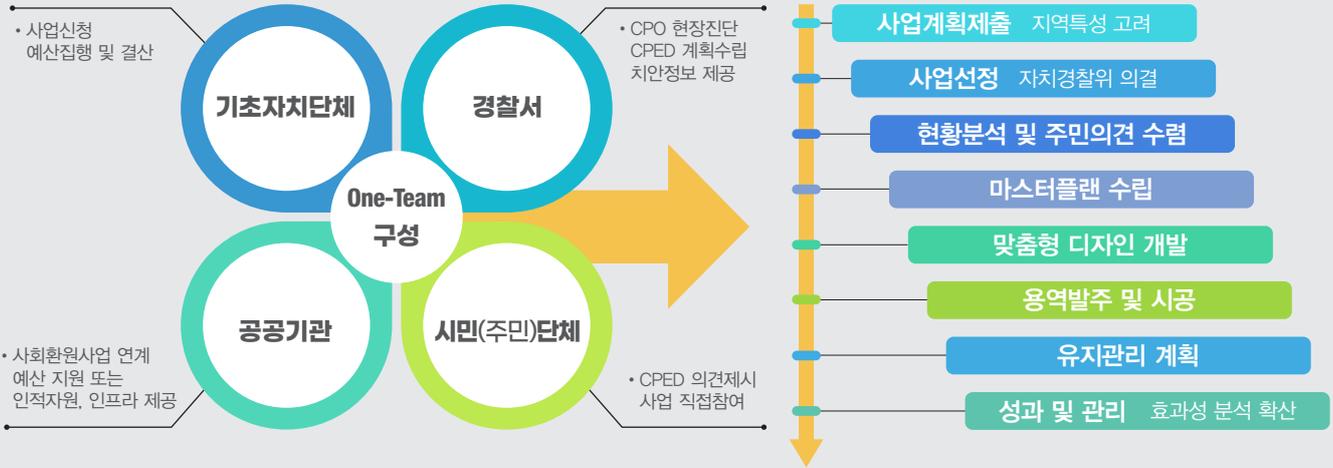
지역 거버넌스 구성 및 협업모델

Ⅰ 지역 거버넌스 구성 Ⅰ



- ▶ **자치경찰위원회** 연계 및 HUB 역할
- ▶ **지역 거버넌스** 지역 내 치안 수요 등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 ▶ **공공기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인적자원 또는 공공인프라 지원
- ▶ **지역사회 시민단체 또는 주민단체** 참여를 통한 능동적 시민주도형 사업 전개, “함께 디자인하고, 함께 창조하고, 함께 만드는 형태의 시민 참여”

| 협업모델 |



| 주요 성과 |

- △공공기관-기초자치구별 매칭, 지역 환원 사업예산의 연속적 투입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 △단발성 사업 지양, 거버넌스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지역의 치안상 효과성 높은 사업 발굴 가능

2단계 (’22년~’27년)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시테크노파크 간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구형 스마트 CPTED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과학기술안전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R&D) 선행연구용역과제’에 공모·선정되어 ’22년 9월~12월까지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기대 효과 - 자치경찰위원회·경찰청 중심, CPTED 사업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대구형 CPTED 플랫폼 구축 사업’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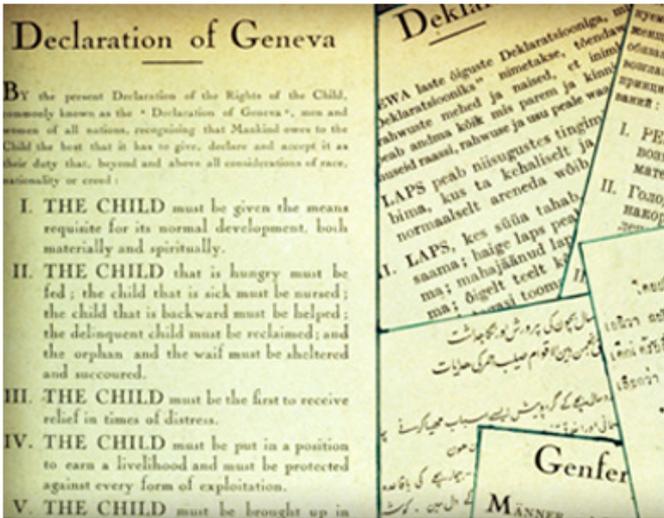
먼저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부응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도가 개선되면 대구의 안전 도시 이미지는 점차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지역 관광 및 유입인구 활성화, 신지역 관광 개발 등의 효과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을 향한 새로운 고민, ‘대구형 CPTED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안전도시’를 향한 대구의 꿈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기술적	범죄예방 플랫폼 기반 전국 통합 CPTED 인증체계 기반 마련
경제적	지역특화 치안서비스 발굴을 통한 전·후방 관련 산업 육성
사회적	‘표준화된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반 마련’으로 기존 CPTED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

“아이·청소년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아동의 권리와 국제사회의 인식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시작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다수 생기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국제연맹에서는 1924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선포하였는데, 이 선언에서 인류는 가장 좋은 것을 아동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유엔은 1959년 아동이 성별, 국적, 종교, 출생배경 등 어떠한 유형의 차별에서도 벗어나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담은 「아동권리선언」을 선포하였으며, 1989년에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협약의 당사국들이 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를 금지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제34조> : 아동의 성착취 방지 및 보호 의무 명시

- ①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유인, 강요하는 행위
- ② 상업 목적의 성적 착취에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 ③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보여주는 시청각 이미지 제작에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
- ④ 아동 성매매, 성 노예, 여행 및 관광에서의 성착취, 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강제결혼을 위한 국내적·국제적 아동매매, 그 밖에 물리적 힘이나 억압을 동반하지 않을 때에도 심리적으로 강제적이고, 착취적이며, 상처를 주는 성적 피해를 주는 행위

이와 같은 ‘성착취’의 개념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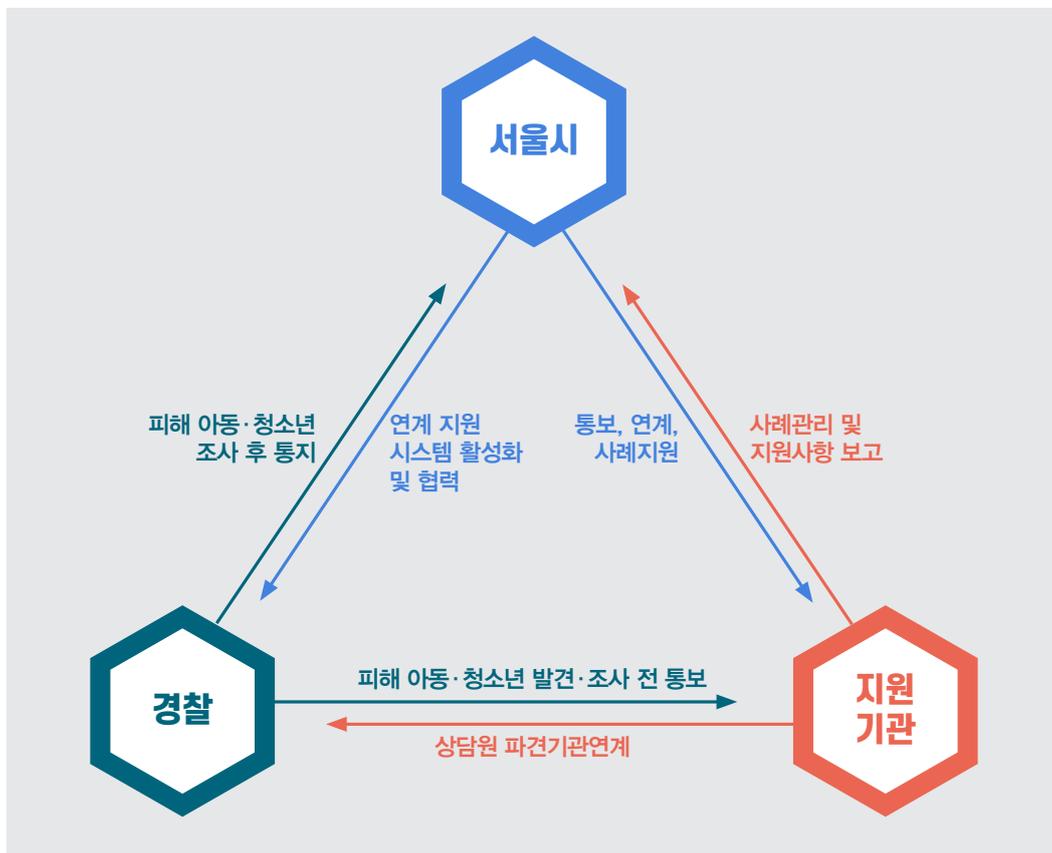
1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서울시는 먼저 전국 최초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성매매 피해자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법률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센터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원이 조사에 동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연계 및 지원체계〉

2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부모·대학생·지역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스터디 카페,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 등을 직접 찾아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를 연계해주는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성착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을 통한 1:1 멘토링 실시, 자립캠프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나아가 가족 지지기반이 취약한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1천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저학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자립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안심 환경조성을 위한 예방 및 감시 강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로로 정보통신기술이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소속 전문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개입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합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를 전면 퇴출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

각종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강화된 사전 예방 및 감시 활동으로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내일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치경찰 현장에서 지금

부산 산책하며 동네 지키는 '부산 반려견 순찰대' 출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22. 10. 1. '부산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찰대는 남구와 수영구에서 시범 운영한 후 부산시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한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범죄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2에 신고해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 파손이나 생활 불편 사항은 120(부산시 콜센터)에 통보함으로써 지역치안 강화에 일조할 예정입니다.

대전 전국 최초 '자치경찰 다목적 경찰차량' 운영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현장 경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 다목적 경찰차량'을 특수 제작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다목적 경찰차량은 △방범순찰을 위한 거점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현장 지휘소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 및 길거리 청소년 선도 △음주단속·지역 행사장 교통관리 등 다양한 자치경찰 현장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라북도,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및 의료서비스, 임시 보호시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1366전북센터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 구축 △스마트초인종·가정용CCTV·비상벨 등 스토킹 안심장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전북경찰청, 전북도, 민간기업 등 참여

광주 '광주 자치경찰의 VISION과 발전방안' 학술세미나 개최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광주 자치경찰의 VISION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 한국공인행정학회,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조선대학교 공동 주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광주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방안(제1주제) △광주형 자치경찰의 미래전략(제2주제)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제3주제) △자치경찰제도 개선방안(제4주제)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경찰청에서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일정한 경우 서면 또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을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가 가능해질 것이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1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토론이 필요한 일상적·반복적 안건으로서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이하 "위원장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위원장협의회는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한다.

※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22. 9. 19.)을 거쳐 입법 예고('22. 10. 19 ~ 11. 18.) 중

일본경찰청 대표단, 한국 경찰청 방문



일본경찰청은 한국 자치경찰·수사구조 등 치안 자료를 수집하고 양국 경찰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2. 9. 28. ~ '22. 10. 1. 경찰청·서울경찰청 등 한국 경찰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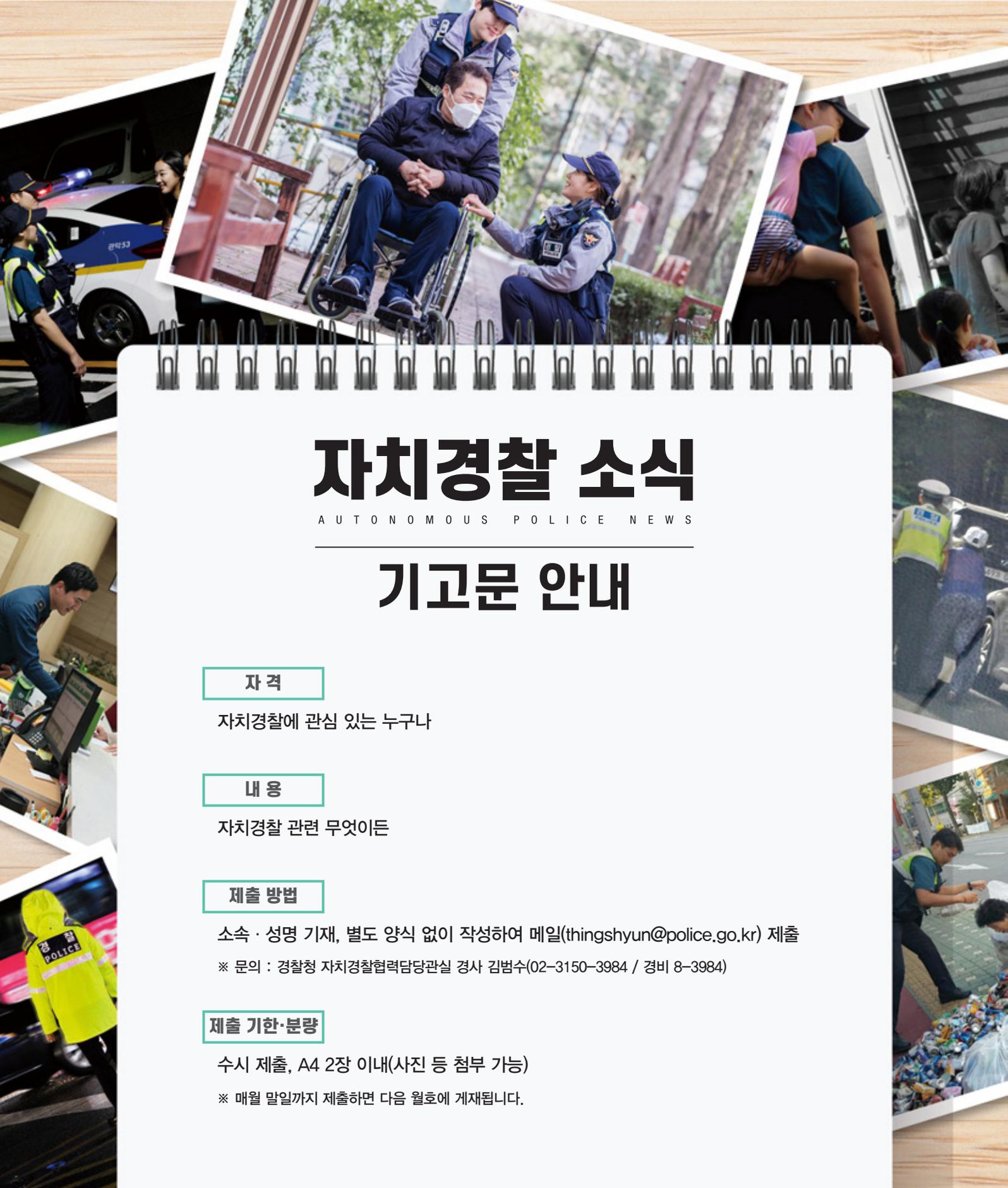
특히 9. 29. 경찰청을 방문한 이시이 류 경시정*(일본경찰청 관방기획과 국제협력실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분장 △지휘·감독권자 및 시·도경찰청장 임명권자 등 한국 자치경찰의 운영방식 및 체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총경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회의 참석 및 경찰청 주요 정책 공유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경무관 김성희)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2. 10. 1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원탁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종합계획 △사회적 이슈 범죄 예방 종합계획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R&D)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현안 업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기고문 안내

자격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용

자치경찰 관련 무엇이든

제출 방법

소속·성명 기재, 별도 양식 없이 작성하여 메일(thingshyun@police.go.kr) 제출

※ 문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경사 김범수(02-3150-3984 / 경비 8-3984)

제출 기한·분량

수시 제출, A4 2장 이내(사진 등 첨부 가능)

※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다음 월호에 게재됩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2022년 10월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발행일 2022년 11월 9일 No. 13

발행인 김성희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편집자 전창훈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

임윤상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김범수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자치경찰 소식지'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각종 정책 수립·추진 사항 등을 안내·공유하기 위해 매월 온라인(PDF) 형태로 발간, 전국 경찰관 및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학회·연구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